

#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11월 16일 류재구 의원 등 12인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11월 1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7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(2009년 12월 17일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류재구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사회경제적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, 음주 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한 음주청정지역 지정 (안 제 3조)
-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(안 제4조)
- 청소년·대학생·직장인 음주예방 및 절주 등 음주문화 환경조성 (안 제5조)

- 청소년 대상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(안 제6조)
-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(안 제7조)
- 절주 등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은 「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 (안 제9조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단순히 선언적인 조례로 보이는데?	○ 음주청정구역 지정 등을 통해 청소년 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임.
○ 음주청정구역내에서의 음주행위 등을 금지하는 강제조항이 없어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이 듭.	○ 상위법령에 처벌규정이 없어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. (이상 류재구 의원)
○ 담당부서 입장에서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?	○ 현재도 금연 및 음주건전 공원을 6개소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주기적으로 현장에 나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지도활동을 하고 있음.
○ 같은 조례가 제정된 시·군 현황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?	○ 15개 시·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,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주기적인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있음. (이상 보건관리과장)

#### 4. 토론요지

##### 가. 반대토론

-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조례안이므로 보류하여 보완하는 것이 타당함.

##### 나. 찬성토론

- 음주 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회규범 성격의 조례안이므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함.

#### 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####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#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부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지역 내에 음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사회경제적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 피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음주청정구역”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사회질서와 안녕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.
2. “청소년 클린판매점”이란 주류판매업소 중 「청소년보호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 시 연령 확인 절차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.
3. “절주”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, 신체적,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음주청정지역 지정) ① 부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
2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어린이 공원,

역사공원, 문화공원

3. 「학교보건법」 제5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·고시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

4. 어린이 놀이터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② 시장은 읍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읍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) 시장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.

제5조(건전한 읍주문화 교육 및 홍보) 시장은 청소년·대학생·직장인에게 실시하는 읍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읍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민간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)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·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읍주나 과도한 읍주를 권장·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·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

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음주폐해로부터 보호) 시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.

1.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선별, 상담 및 치료연계서비스 제공
2.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

제8조(주민의 참여) 모든 시민은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시장은 공청회,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 ① 시장은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(자)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, 지원방법, 지원절차 등은 「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506호
의결 년월일	2009. 12. 23. (제157회)

발의년월일 : 2009. 10. 13.

발 의 자 : 류재구의원등12인

## □ 제안이유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사회경제적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, 음주 피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## □ 주요내용

- 가.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한 음주청정지역 지정 (안 제 3조)
- 나.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(안 제4조)
- 다. 청소년·대학생·직장인 음주예방 및 절주 등 음주문화 환경 조성(안 제5조)

- 라. 청소년 대상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(안 제6조)
- 마.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(안 제7조)
- 바. 절주 등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은 「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 (안 제9조)

#### □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, 제6조, 제8조 및 제12조
- 나. 예산이 수반되므로 「지방자치법」 제132조에 의거 구청장 의견 청취

#### □ 제정 조례안 : 붙임

#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부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지역 내에 음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사회경제적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 피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음주청정구역”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사회질서와 안녕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.
2. “청소년 클린판매점”이란 주류판매업소 중 「청소년보호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 시 연령 확인 절차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.
3. “절주”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, 신체적,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음주청정지역 지정) ① 부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
2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어린이 공원, 역사공원, 문화공원
3. 「학교보건법」 제5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·고시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
4. 어린이 놀이터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② 시장은 읍·군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읍·군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) 시장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.

제5조(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) 시장은 청소년·대학생·직장인에게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민간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)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·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

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·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·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음주폐해로부터 보호) 시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.

1.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선별, 상담 및 치료연계서비스 제공
2.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

제8조(주민의 참여) 모든 시민은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시장은 공청회,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 ① 시장은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(자)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, 지원방법, 지원절차 등은 「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

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<관계법령 발췌서>

## ○ 국민건강증진법

**제3조 (책임)**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6조 (건강생활의 지원등)**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1997.12.13, 2008.2.29>

**제8조 (금연 및 절주운동등)**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·홍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9.27>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·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(이하 "제조자등"이라 한다)는 담배갑포장지 앞·뒷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(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와 다음 각 호의 발암성물질을 각각 표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.1.19, 2007.12.14>

1. 나프틸아민
2. 니켈
3. 벤젠
4. 비닐 크롤라이드
5. 비소
6. 카드뮴

④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.

⑤삭제 <2002.1.19>

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 또는 발암성물질의 표시내용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2.1.19, 2007.12.14, 2008.2.29>

**제12조 (보건교육의 실시등)**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·건강상태·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개정 1999.2.8>

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

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1997.12.13, 1999.2.8, 2008.2.29>
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1999.2.8>

**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
잔성의원서명부**

의원명	서명	비고	의원명	서명	비고
김세기	김세기				
윤상근	윤상근				
이현래	이현래				
유종원	유종원				
김승진	김승진				
김종근	김종근				
최채욱	최채욱				
최영희	최영희				
신석철	신석철				
박동학	박동학				
정영태	정영태				
최영수	최영수				